

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 계약기간

- 가.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한다
- 나.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(계약변경)을 원칙으로 한다
 - (1)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 - (2)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로 작성한다.
 - (3)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
 - (4)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2 계약목적

- 가.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
- 나.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자사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

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가. 본인부담금 -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로 한다
(단,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·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%는 60%감경, 건강보험료 순위 25~50%는 40%감경,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)
- 나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(재가 기준)은 아래 표와 같다.
(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.- 2021년 기준)

등 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월 한도액	1,885,000	1,690,000	1,417,200	1,306,200	1,121,000	624.600
본인부담금 내역	기초 수급자				0% 부담	
	차상위계층				6% 부담	
	보험료감경대상자				9% 부담	
	일반수급자				15% 부담	

(방문요양, 원)

30분이상	60분이상	90분이상	120분이상	150분이상	180분이상	210분이상	240분이상
16,190	23,480	31,650	40,280	46,970	52,880	58,930	65,000

(방문목욕, 원)

차량이용(차량 내)	차량이용(가정 내)	차량 미이용
82,160	74,070	46,250

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,

가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1)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2)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3)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4)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나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

- 1) 수급자 건강,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2)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에 관한 의무
- 3) 인적사항,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4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6)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

5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가. 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. 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

- 1)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2)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3)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4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- 5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6)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
나. 이용료 등 수납 -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.

다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-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.